*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행복생 금융파트너

변액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KB 최선의선택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 이 보험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을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1형(보증형)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모집종사자는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사 KB국민은행

보험사 KB라이프

KB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www.kbstar.com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제2003091003호

KB라이프
고객센터 : 1588-337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06253)
www.kblife.co.kr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37777호(2023-08-16 ~ 2024-08-15)
준법감시인확인필-SM-2308008-1(2023.08.09~2024.08.08)

상품도해(1형 보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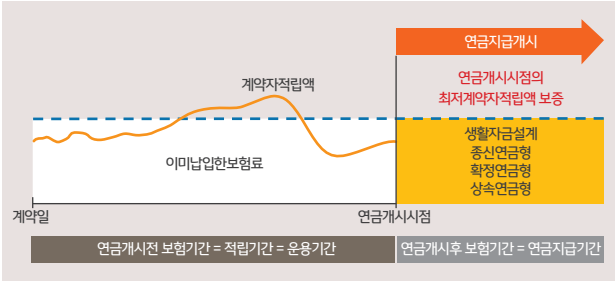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정해지고, 0~50% 범위내에서 연금개시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①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1형(보증형)에 한함)

③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해약환급금, 연금총액 등)이 변동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사망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최저보증하며 1형(보증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에도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1) 최저사망보험금

①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 사망 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1형(보증형)에 한함)

①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보증비용

구분	1형(보증형)	2형(미보증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매년 특별계정적립액의 0.07%	매년 특별계정적립액의 0.05%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	매년 특별계정적립액의 0.45%	-

* 이 상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2형(미보증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내용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개인형(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또는 체증형(5%)
연금지급개시나이		45~90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정해지고, 0~50% 범위 내에서 연금지급개시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및 최대가입나이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기간	가입나이	최대 가입나이
1형(보증형)	일시납	7년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7]세	75세
2형(미보증형)		5년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5]세	

※ 최소거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최소기간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최소보험료는 3,000만원 이상 입니다.

추가납입보험료

(1)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형(보증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5년 이전까지, 2형(미보증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1년 이전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3)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4)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10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5)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기본보험료 납입시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의 60%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2영업일을 기준가격 적용일로 하여 지급하며,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입안내

(3) 스마트솔루션펀드에 투입된 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납입을 하지 않을 시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4)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와 2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자적립액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8)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수익만큼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계약자적립액 이전

(1) 보험계약 체결 시 "스마트솔루션 펀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솔루션 펀드"에서 투자하는 구조화 증권의 만기는 1년 내외로 합니다. 구조화 증권이 만기상환되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구조화 증권으로 재투자되며, 만기 상환 후 재투자시 수익 구조는 이미 상환된 구조화 증권의 수익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계약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편입비율 변경(단, 펀드별 편입비율은 1% 단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솔루션 펀드"에서 구조화 증권에 투자시 해당 투자기간 내에는 "채권형II 펀드", "미국주식형 펀드", "파워주식집중형 펀드"와 "스마트솔루션 펀드" 간의 펀드변경은 불가하며 "미국주식형 펀드"와 "파워주식집중형 펀드"의 편입비율 합산은 전체 계약자적립액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스마트솔루션 펀드"의 구조화 증권 투자기간의 종료 후 새로운 구조화 증권의 투자기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채권형II 펀드", "미국주식형 펀드", "파워주식집중형 펀드"와 "스마트솔루션 펀드" 간의 펀드변경이 가능합니다.

(4) 현재 투자중인 "스마트솔루션 펀드"의 구조화 증권이 만기상환 되어 새로운 구조화 증권으로 재투자 시 재투자 되는 구조화 증권의 만기일 이전에 계약자의 연금개시시점이 도래할 경우, 재투자 되지 않고 "스마트솔루션 펀드"의 계약자적립액 전부는 "채권형II 펀드"로 자동전환되며, 이후 "스마트솔루션 펀드"로의 재투입은 제한됩니다.

(5)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단, 펀드별 편입비율은 1% 단위)하여야 하며, "스마트솔루션 펀드"로의 추가납입은 불가합니다.

(6)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일시납보험료의 10%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생활설계자금선택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활설계자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종신연금형	개인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종신연금형	부부형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20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50%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1.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2.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이란 생활설계자금의 인출을 위해 계약자가 회사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계약체결시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정해지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0~50%까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에는 생활설계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3. 생활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생활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장내용

4. “생활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생활설계자금을 지급받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생활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5.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1형(보증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약관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제43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 7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7.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각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8. 공시이율(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안에 개인형은 피보험자, 부부형은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중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개인형(100세 보증)은 “100세-연금개시나이”횟수만큼 연금연액이 보증지급됩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체증형(5%)은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5%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해당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각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1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속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상속연금형의 연금액 발생분(납입후 계약관리비용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1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7.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펀드안내

1 스마트솔루션

운용사 : KB자산운용

다양한 투자 대상군에 대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펀드로, 구조화 증권(DLS 등), 국내외 상장 주식, 채권(국공채, 특수채 및 금융채,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기타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국내외 집합투자기구(ETF포함)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구조화 증권은 주식,채권,원자재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참여율에 따라 추종하며,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구조화 증권 자산 100% 이하 | 유동성 자산 외

2 채권형II

운용사 : 유리자산운용

채권, 채권 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형 자산 95% 이하 |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3 미국 주식형

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순자산(NAV)의100% 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100% 이하 | 유동성 자산

재간접 펀드수수료 : 특별계정적립액 대비 연간 최대 0.300% 이내

4 파워주식 집중형

운용사 : KB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형 자산에 순자산(NAV)의 100%이하를 투자하며, 나머지 부분은 채권형자산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채권형 자산이란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이며, 주식형자산이란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 등 입니다.

주식 등 100% 이하 | 유동성 자산 외

재간접 펀드수수료 : 특별계정적립액 대비 연간 최대 0.267% 이내

투자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① 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펀드의 자산운용 방법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③ 각 펀드별로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 부가됩니다. 또한, 재간접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초펀드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자산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④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⑤ 상기 내용은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한도는 약관 및 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기준 : 매년 특별계정적립액)

펀드명	투자일임보수	운영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스마트솔루션	0.200%	0.465%	0.020%	0.015%
채권형II	0.010%	0.200%	0.025%	0.015%
미국주식형	0.010%	0.455%	0.020%	0.015%
파워주식집중형	0.250%	0.505%	0.030%	0.015%

※ 실제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가 상기표에서 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보수에서 충당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1형 보증형)

기준 : 1형 보증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일시납기본보험료 3,000만원, 단위: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투자수익률 -1.0%가정시 (순수익률 -1.52%)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 (순수익률 1.73%)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1.5 (3.375%)가정시 (순수익률 2.86%)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3,000	2,965	2,955	98.5%	2,979	99.3%	2,987	99.6%
6개월	3,000	2,953	2,931	97.7%	2,979	99.3%	2,996	99.9%
9개월	3,000	2,940	2,907	96.9%	2,979	99.3%	3,004	100.1%
1년	3,000	2,927	2,884	96.1%	2,979	99.3%	3,012	100.4%
2년	3,000	2,908	2,821	94.0%	3,011	100.4%	3,078	102.6%
3년	3,000	2,899	2,769	92.3%	3,053	101.8%	3,156	105.2%
4년	3,000	2,890	2,718	90.6%	3,097	103.2%	3,237	107.9%
5년	3,000	2,881	2,668	88.9%	3,141	104.7%	3,319	110.6%
6년	3,000	2,872	2,619	87.3%	3,186	106.2%	3,404	113.5%
7년	3,000	2,863	2,570	85.7%	3,232	107.7%	3,492	116.4%
8년	3,000	2,854	2,522	84.1%	3,278	109.3%	3,582	119.4%
9년	3,000	2,845	2,475	82.5%	3,325	110.8%	3,674	122.5%
10년	3,000	2,836	2,429	81.0%	3,373	112.4%	3,770	125.7%
15년	3,000	2,790	2,207	73.6%	3,627	120.9%	4,287	142.9%
20년	3,000	2,745	2,002	66.7%	3,902	130.1%	4,883	162.8%

1.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 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적립액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특별계정(펀드)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운용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4.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5.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상한 또는 하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2형 미보증형)

기준 : 2형 미보증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일시납기본보험료 3,000만원, 단위: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투자수익률 -2.25% 가정시 (순수익률 -2.3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 (순수익률 2.2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1.5 (3.375%)가정시 (순수익률 3.33%)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3,000	2,965	2,948	98.3%	2,982	99.4%	2,990	99.7%
6개월	3,000	2,953	2,918	97.3%	2,985	99.5%	3,001	100.0%
9개월	3,000	2,940	2,889	96.3%	2,989	99.6%	3,013	100.4%
1년	3,000	2,927	2,859	95.3%	2,992	99.7%	3,025	100.8%
2년	3,000	2,908	2,775	92.5%	3,038	101.3%	3,106	103.5%
3년	3,000	2,899	2,702	90.1%	3,096	103.2%	3,200	106.7%
4년	3,000	2,890	2,631	87.7%	3,155	105.2%	3,297	109.9%
5년	3,000	2,881	2,561	85.4%	3,215	107.2%	3,398	113.3%
6년	3,000	2,872	2,494	83.1%	3,277	109.2%	3,501	116.7%
7년	3,000	2,863	2,427	80.9%	3,340	111.3%	3,609	120.3%
8년	3,000	2,854	2,363	78.8%	3,404	113.5%	3,719	124.0%
9년	3,000	2,845	2,299	76.6%	3,470	115.7%	3,834	127.8%
10년	3,000	2,836	2,238	74.6%	3,537	117.9%	3,952	131.7%
15년	3,000	2,790	1,949	65.0%	3,896	129.9%	4,605	153.5%
20년	3,000	2,745	1,693	56.4%	4,296	143.2%	5,374	179.1%

7.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형(보증형)의 경우 -1.0%, 2형(미보증형)의 경우 -2.25%,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및 동 이율의 1.5배인 3.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10.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11. 이 자료는 당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의 부본이 아닙니다.
12.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을 통해 비교•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연액지급액 예시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주기 : 년단위)

기준 : 1형 보증형, 남자, 40세, 일시납기본보험료 3,000만원, 단위 : 만원

구분				연금개시전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1.0%가정시 (순수익률 -1.52%)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 (순수익률 1.73%)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x1.5 (3.375%)가정시 (순수익률 2.86%)	
				연금개시 후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가정시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가정시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3,000		3,902		4,883	
종신 연금형	개인형	100세 보증형	정액형		79	120	103	157	129	196
			5% 체증형		53	83	69	109	87	136
		20년 보증형	정액형		91	133	118	173	148	217
			5% 체증형		62	93	81	121	101	151
		기대여명 보증형	정액형		90	132	117	172	147	215
			5% 체증형		61	92	80	120	100	150
확정 연금형	5년확정				599	628	780	817	976	1,023
	10년확정				303	336	395	437	494	548
	15년확정				205	240	266	312	333	390
	20년확정				155	192	202	250	253	312
	30년확정				106	145	138	189	173	236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 생존시				14	83	19	108	24	136

※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형(보증형)의 경우 -1.0%, 2형(미보증형)의 경우 -2.25%,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및 동 이율의 1.5배인 3.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1.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상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 및 연금개시 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2023년 8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9%)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3.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4.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준 : 2형 미보증형, 남자, 40세, 일시납기본보험료 3,000만원, 단위 : 만원

구분				연금개시전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2.25% 가정시 (순수익률 -2.3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 (순수익률 2.2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x1.5 (3.375%)가정시 (순수익률 3.33%)	
				연금개시 후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가정시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가정시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1,693		4,296		5,374	
종신 연금형	개인형	100세 보증형	정액형		44	68	113	173	141	216
			5% 체증형		30	47	77	120	96	150
		20년 보증형	정액형		51	75	130	191	163	239
			5% 체증형		35	52	89	133	111	167
		기대여명 보증형	정액형		51	74	129	189	162	237
			5% 체증형		34	52	88	132	111	165
확정 연금형	5년확정				338	354	859	900	1,074	1,125
	10년확정				171	190	434	482	544	603
	15년확정				115	135	293	343	367	430
	20년확정				87	108	222	275	278	344
	30년확정				60	82	152	208	190	260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 생존시				8	47	21	119	26	149

5. 상기 연금액 예시는 투자수익률이 보험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연금액 예시입니다.
6. 상기 예시된 금액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상한 또는 하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8.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9.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2형 미보증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최저사망 보장부분에 적용된 이율은 연복리 2.3%이며, 적립부분은 특별계정 운용실적(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1형(보증형)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령계약자와 관련된 사항

고령금융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여야 하며,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령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담 안내 : 1588-3374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KB라이프

KB라이프